

[생애최초 특별공급]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대봉서한이다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를 드리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기간

- 기간 : 2021. 12. 10(금) ~ 12. 17(금) 10:00 ~ 17:00
- 장소 : 침산동 서한모델하우스 (북구 침산동 156-18번지 / ☎ 322-4700)

■ 제출서류 [공통 서류(필수) 외의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1통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불가함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분리배우자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최초모집공고일(11. 12)까지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확인서 가 발급되어야 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소득증빙 서류 (만19세이상 세대원)	본인/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직장(일반)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해당자	소득세 납부	본인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 이상)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제3자 대리 계약시		당첨자 위임용 인감증명 1통,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본인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외 대리 신청 및 계약 불가	

■ 유의사항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